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일본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로, 매년 2월 22일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개최됩니다.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드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 (주)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주장

일본의 주장

역사적 주장

- 일본은 17세기 막부 시절, 일본의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했다고 주장
-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고 주장

법적 주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해 일본이 포기한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 독도가 없었음을 주장

행정적 주장

- 일본 정부는 현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하고 주장
- 매년 2월22일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로 기념 행사를 개최함

각 나라의 주장

한국의 반박과 입장

역사적 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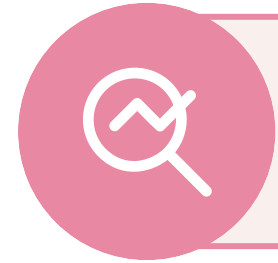
- 삼국시대 이래로 한국 영토였고, 조선 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한 관청이 존재
- 안용복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이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근거가 명확함

법적 반박

-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연합국 내에서도 독도를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은 중립을 유지함
- 한국은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경계선을 설정함

국제법적 논리

- 현재 국제법에서는 실효적 지배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경찰 주둔, 등대 설치, 민간인 거주 등을 통해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영해의 정의

국가가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바다



접속수역의 정의

영해 바깥, 일부 통제 가능 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의 정의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는 구역



대륙붕의 정의

해저 지질 구조에 따라 연장 가능

해양법 협약과 독도

기본 개념 정리

독도가 유의미한 섬인지, 아니면 단순한 바위 인지가 일본과의 해양 관할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

다케시마 도해 면허

다케시마 도해 면허란?

일본이 울릉도와 때때로 독도까지 어업 및 벌목 등의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일부 어민들에게 허가한 문서

정의

- "다케시마"는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리키던 명칭입니다
- 17세기 후반~19세기 초, 일본 돗토리번 소속 어민들에게 울릉도 도해 허가를 내렸습니다
- 주로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이 관련되었고, 독도까지도 함께 항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 1618년 막부가 오야·무라카와 가문에 다케시마 도해 면허를 발급.
- 이후 수십 년 간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독도 부근에서 어업·벌목 활동.
- 조선은 이를 불법 침범으로 간주, 일본 측에 항의.

다케시마 도해 면허

안용복 사건과의 연결

- 1693년 ~ 1696년 안용복 사건 당시,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항의
- 이 사건을 계기로 에도 막부는 1696년 일본 어민들의 도해를 금지하게 됨
- 일본 내에서도 도해 면허의 유효성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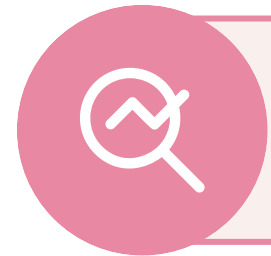
한국 측 주장

- 조선의 지속적인 항의 및 안용복 사건으로 도해 금지 → 일본 정부도 조선 영토로 인식함
- 이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법적으로 독도 영유권 확립

일본 측 주장

- 도해 면허는 독도에 대한 활동도 포함되므로 일본의 실효적 지배 근거라고 주장
- 무주지 선점의 일환으로 해석

울릉도 수토제도



15세기 (세종~단종)

『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명시



17세기 후반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불법 출입 증가 → 문제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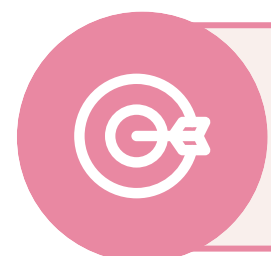
1694년

숙종 대에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계기로 울릉도 수토관 파견 제도화 결정



1696년

일본은 막부령으로 울릉도 출입 금지 조선은 수토 활동 강화



독도 포함 여부

울릉도 수토관이 죽도, 우산도도 함께 순시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

수토는 섬을 순시한다는 뜻

조선 정부가 울릉도와 그 주변 도서에 관리를 정기적으로 파견하여 이 지역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불법 침입을 감시하던 제도

안용복



안용복(安龍福, 1691~1752)

조선 후기의 어민이자 민간 외교관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독도 수호 활동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민간인의 외교적 노력과 국가의 영토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안용복 납치

1693년 안용복 납치 사건

사건 경위

- 안용복과 박어둔은 울릉도에서 조업 중 일본 어부와 마주치게 되고, 양측 사이에 어장 충돌 발생
- 무단으로 억류하여 일본으로 납치, 돗토리번으로 끌고 감

도해 허가 문제

- 돗토리번의 어민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음
- 울릉도를 일본 땅이라 주장하며 활동, 조선은 이를 불법 침범으로 간주하고 일본 측에 강력항의

외교적 파장

- 조선 정부는 즉각 일본 측에 항의
- 선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려는 입장에서 조사를 시작, 안용복은 억류되었다가 조선으로 송환됨

돗토리번은 독도 관할

돗토리번의 공식 답변

-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니다
- 즉, 막부 직할 영토도 아니고,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힘
- 이 문서는 현재 일본 외무성 공식 문서에도 보존되어 있음
- 일본이 당시 독도를 포함한 동해 섬들을 자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료
- 일본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록이므로, 일본의 고유 영토 주장과 완전히 배치됨

제2차 안용복 사건

1696년 제2차 안용복 일본 방문

배경

- 일본 어민들의 독도 어로 활동이 계속되자, 안용복이 스스로 일본에 재차 건너감

전개

-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며 조선 왕의 공문을 전달
- 일본의 막부 관청에 이 사실이 기록됨

결말

- 일본은 다시 한 번 자국 어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림
- 이 기록은 일본의 공문서에도 남아 있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중요한 문서가 됨

안용복 사건

역사적 의미

안용복 사건은 조선이 독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일본 측 사료에도 안용복의 주장과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민간 외교 활동이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관련 자료

《속종실록》

- 안용복 사건에 대한 조선 조정의 기록

일본 문서

-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문서 내 안용복 언급

독도박물관

- 관련 유물과 전시 자료 확인 가능

안용복 사건

관련 자료

《숙종실록》

- 안용복 사건에 대한 조선 조정의 기록

일본 문서

-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문서 내 안용복 언급

독도박물관

- 관련 유물과 전시 자료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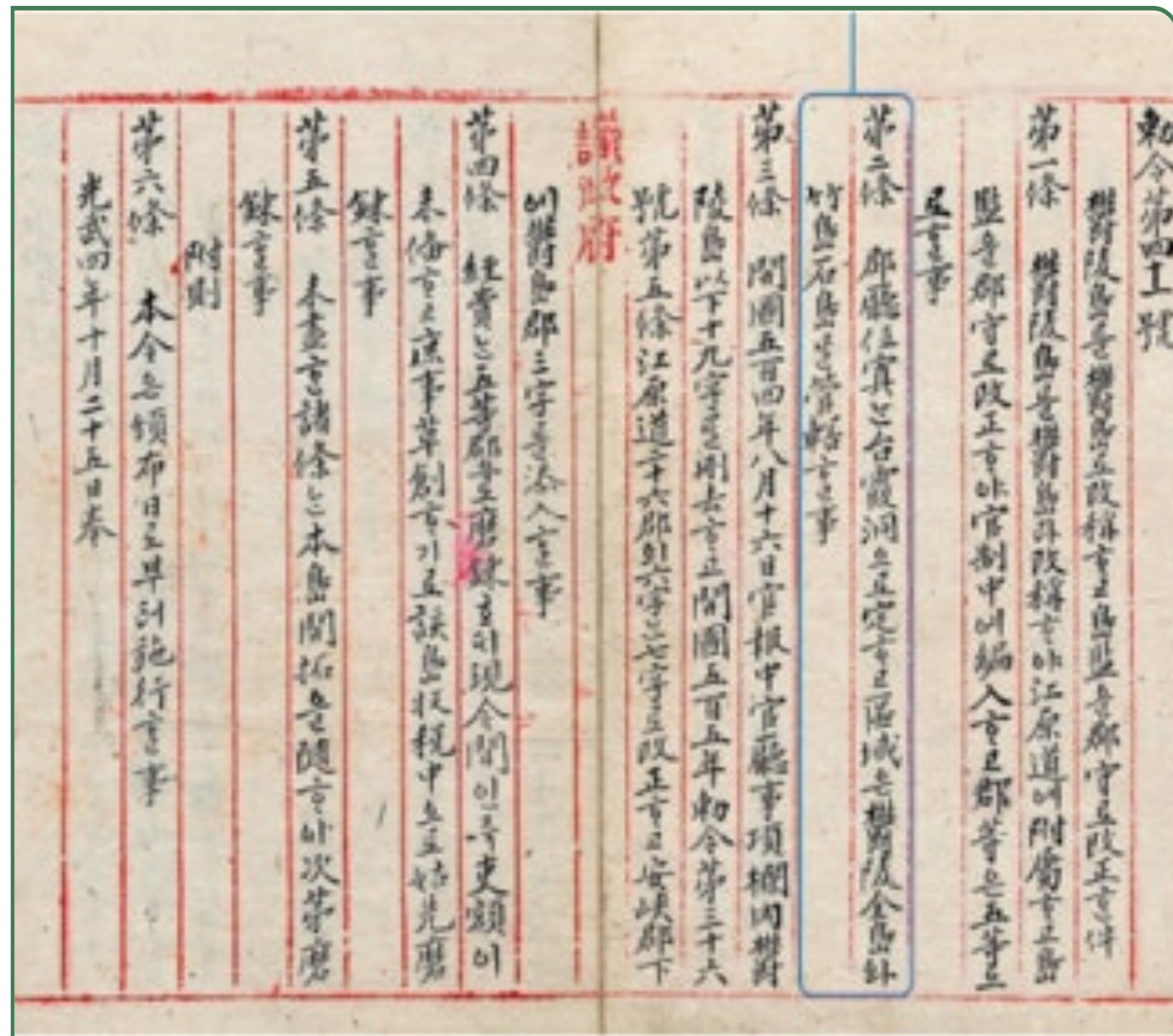
칙령 제41호 반포

1900년 10월 25일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법령입니다. 이 칙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법적·역사적 근거 중 하나입니다.

공식 명

「칙령 제41호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군(鬱島郡)으로 개칭하고 군수를 임명하는 건」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

-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여 행정 구역으로 설치
- 관할 구역을 명시
- 울도군의 관할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포함한다
- 여기서 말하는 죽도(竹島)는 오늘날의 울릉도 동쪽의 작은 섬
- 석도(石島)는 오늘날의 독도를 의미함
- 군수(郡守)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게 함
- 초대 울도군수: 심흥택

칙령 제41호 반포

역사적 의미

국가 차원의 공식 법령으로 독도(석도)를 대한제국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기에 앞서, 5년 전인 1900년에 이미 대한제국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었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관련 자료

- 관보 제1716호 (1900년 10월 27일자)에 게재됨

- 현재 원문과 번역문은 국가기록원 등에서 확인 가능

- 10월 25일이 오늘날 독도의 날로 지정된 이유이기도 함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주요 내용

-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1월, 어업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신청을 받아
- 독도(당시 일본이 '다케시마'로 표기)를 시마네현 관할로 편입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고시 원문 중 요지
- 죽도(竹島, 현재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도사이쇼 관할로 정한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다케시마의 날

- 일본은 2005년 시마네현이 이 고시 발표 100주년을 기념하여
-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 이에 대해 한국은 강력히 반발, 외교적 항의와 함께 독도 관련 교육, 기념사업 강화 중

당시 국제 정세

- 1905년은 러일전쟁 시기, 대한 제국은 사실상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영향 하에 놓여 있던 상태
- 대한제국과 협의 없이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으로, 국제법상 불법적인 행위로 평가받음

대한민국의 입장

-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상태
- 일본의 1905년 고시는 무주지 (주인 없는 땅) 선점 원칙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이며, →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



감사합니다